

유엔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구금 시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

제네바/서울 (2020년 7월 28일) – 오늘 발간된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은 국가 안보 및 치안 담당자로부터 여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약 100여 건의 진술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들 여성은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벗어나 유엔 인권 관계자와 심도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해외 여행은 사실상 금지이지만, 여성은 생계 목적으로 돈을 벌고자, 혹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위험한 여정에 나선다. 대다수는 인신매매자의 손에 넘어가, 결국 혈값에 담보노동을 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때로 강제로 결혼을 한다. 이들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후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성에 의해 구금된다. 이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또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절차를 거쳐 정부 관계자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당 보고서는 본국으로 송환된 이들, 특히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했거나 기독교 단체를 접촉한 등의 이유로 “반역자”로 불리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처벌받고 수차례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강조한다.

“예심원이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찼다. 국가보위성에서 특히 심하게 대했다. 중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맞았다. 너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아직도 아프다”고 진술한 사례가 있다.

여성들은 면담 중 비인도적이고 과밀화 상태이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자연광이나 신선한 공기를 쬐는 일이 거의 없었던 구금 경험을 진술했다. 각자에게 할당된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때를 포함하여,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는 등 빈번하게 고문과 학대에 노출됐다.

“맞기 싫어서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다.

구금된 이들은 강제 탈의 및 강도 높은 신체 수색을 당했는데, 국제법에 따르면 성폭력과 학대에 준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고문이나 강간에도 준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일부 여성은 교도관에게 성폭력을 당했거나, 다른 수감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진술은 교도관이 임신 상태인 구금자를 구타하거나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시켜서 낙태를 유발하도록 한 경우도 언급한다.

여성 구금자는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위생 필요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성 교도관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젠더에 따른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여성 모두는 예외없이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결과 영양실조에 걸리고 때로 생리주기에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에 포함된 한 진술에 따르면 “교화소에 있는 동안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 죽었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

“생계를 이어 나가고자 자국을 이탈했으나 결국 처벌을 받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착취 및 인신매매 피해자인 사례가 많은데, 이들 여성은 돌봄의 대상이지, 구금되어 또다시 인권 침해를 당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언급하며 “이들 여성은 정의, 진실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넬슨 만델라 규칙](#)과 [방콕 규칙](#)을 근거로 여성 구금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구금 제도를 국제 규범과 표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국 당국과 유의미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보고서는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여타 회원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범죄, 특히 반인도범죄가 해당국 내에서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책임 규명 절차를 지원하도록 여타 회원국에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들 여성의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노력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가능한 때, 가능한 곳에서 형사적 차원의 책임 규명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영문) 전체 [열람](#)

보고서 (국문) 전체 [열람](#)

끝

추가 정보 및 언론 관련 요청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Rupert Colville - + 41 22 917 9767 / rcolville@ohchr.org, Liz Throssell - + 41 22 917 9296 / ethrossell@ohchr.org, Jeremy Laurence -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태그 및 공유 - 트위터: [@UNHumanRights](https://twitter.com/UNHumanRights),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